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5054
결재일자	2014.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542호

지방행정주사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반경자	이정희	박기웅	김종순	12/24 유재룡
협조				

-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

규정 개정안 승인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

규정 개정안 승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제67회 이사회 의결 후 승인 요청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기에 이를 승인하고자 함

I.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II. 개 요

□ 승인요청일: 2014. 12. 3.

※ 이사회 의결일: 2014. 11. 20.

□ 안 건: 3건

의안번호	의안제목	주요내용
제330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연고관계로 인한 직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확대
제331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일부개정안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대상 및 고발기준의 확대
제332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현재 55세~57세인 정규직 정년을 60세로 연장

III. 검토 내용

1. 의안 제330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임직원행동강령 일부 개정 및 행동강령 용어 등 정비
-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4.6.30.)
- 주요내용
 - 연고관계로 인한 직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확대
 - 행동강령 용어 및 법률명 정비
-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확대 및 단순 용어 정비는 원안 승인
 - 제23조제2항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승인
- 검토결과: 수정 승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략> 가.~바. <생략>		1.<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공단의 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가.~바.<현행과 같음>		
		사. ---- <u>이사장이</u> -----		

2. <생략> 가.~다. <생략>		2.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공단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임직원		가.~다.<현행과 같음>		
		라. ---- <u>이사장이</u> -----		

현행	개정안
<p>1.~3. <생략></p> <p>4. <u>그 밖에 공단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u>소속 기관의 장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u>소속 기관의 장에게</u>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u>공단 퇴직 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5. <u>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6. <u>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7. <u>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② ----- ----- ----- ----- ----- <u>이사장에게</u> ----- ----- ----- ----- ----- <u>이사장에게</u> ----- -----.</p>
<p>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u>소속기관의 장에게</u>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p>	<p>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 ----- ----- ----- <u>이사장에게</u> ----- ----- -----.</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u>이사장</u>----- ----- ----- -----.</p>
<p>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생략></p> <p>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p>
<p>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 ~③<생략></p>	<p>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③<현행과 같음></p>
<p>제17조(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7조의 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p> <p>①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삭 제></p>
<p>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p> <p>① <생략></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u>소속 기관의 장</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u>이사장</u>에게 ----- -----.</p>
<p>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p> <p>① <생략></p> <p>② <u>소속기관의 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이사장</u>은 ----- ----- -----.</p>
<p>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p> <p>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u>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u>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③<생략></p>	<p>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p> <p>①----- -----<u>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u>에 ----- -----.</p> <p>②~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생략>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u>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이사장에게</u>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현행과 같음> ② ----- ----- <u>행동강령</u> <u>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u> ----- ----- ----- ----- ----- -----.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현행과 같음> ② ----- ----- <u>행동강령</u> <u>책임관, 이사장 또는</u> <u>국민권익위원회에</u> ----- ----- ----- ----- ----- -----.

2. 의안 제331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업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일부 개정안

-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대상 및 고발기준의 확대
-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2014. 4.)
- 주요내용
 -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대상 확대
(임직원, 퇴직자 ⇒ 임직원, 퇴직자, 공무수행사인, 업무관련 민간심의위원)
 - 고발기준의 확대 및 세분화
(200만 원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에 대한 고발 의무화)
-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에 따라 고발대상 및 기준 확대
- 검토결과: 원안승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p>제2조(고발대상) <u>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 (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u></p> <p><신설></p>	<p>제2조(고발대상) ① <u>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 및 퇴직자, 공무수행 사인, 업무관련 민간심의위원을 포함한다.</u></p> <p>② <u>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u></p>
<p>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u>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u></p> <p>1. <u>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u></p> <p>2. <u>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u></p> <p>가~다. <생략></p> <p>3.~7. <생략></p>	<p>제4조(고발의 기준) ① ----- ----- -----, -----</p> <p><u>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u></p> <p>1. ----- <u>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경우</u></p> <p>2. <u>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u></p> <p><u><단서 삭제></u></p> <p>가~다 <현행과 같음></p> <p>3.~7. <현행과 같음></p>

3. 의안 제332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직위명을 상향 조정하여 중·하위직급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재 55세 ~ 57세인 정규직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 도모
-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6. 1. 1.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권고」(2014. 4.)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13. 10.)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주요내용
 - 정규직(사무직, 기술직, 사서·체육전문직)에 대한 정년 60세로 연장
 -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을 재량규정에서 기속규정으로 변경
 - 육아휴직 관련 규정: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변경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위원의 수를 3인 이내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
 - 징계부가금 부과조항 신설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횡령 등에 대한 비위행위자에 대해 수수 및 횡령 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조항 신설)
 - 징계시효를 2년 이내에서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확대
 - 별표 1 직종별 직급에 대한 직위명 상향 조정
- 검토의견
 - 직위명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 연장을 조기 시행함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 상위 법규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사항임
- 검토결과: 원안 승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p>제34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사무직, 기술직, <u>사서 전문직</u> : 57세</p> <p>3. <u>체육 전문직</u> : 45세, 단 2008.10.31. 이전 <u>체육전문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57세로 한다.</u></p> <p>4. 현업직 : 55세</p> <p>② <생 략></p>	<p>제34조(정년) ①-----</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서·체육 전문직, 현업직</u> : 60세</p> <p>3. <삭제></p> <p>4.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6조(의원면직)①<생 략></p> <p>② 임용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직원에 대하여 <u>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제36조(의원면직)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 <u>제한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8조(휴직) <생 략></p> <p>1. ~ 5. <생 략></p> <p>6. 만 <u>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u>를 양육하기 위할 때</p>	<p>제38조(휴직)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만 <u>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u> -----</p>
<p>제44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사업1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4급이상 또는 팀장의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과 노사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외부위원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u>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u></p> <p>③~④ <생 략></p>	<p>제44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p> <p>-----</p> <p>----- <u>인사위원회</u> <u>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58조의 2(징계부가금 부과) 이사장은 <u>소속 임직원</u>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u>금품 및 향응</u></p>

현 행	개 정 후
	<u>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u>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 <u>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u>

○ [별표 1]

직 종	직 급	현 행	개 정 후	비 고
사무직·기술직·전문직	2급	본부장	본부장	
	3급	부장	실장	
	4급	차장	부장	
	5급	대리	차장	
	6급	주임	대리	
	7급	주무관	주임	
	8급	주무관	주무관	
	9급	주무관	주무관	
현업직		주무관	주무관	
견습직		주무관	주무관	
보육교사직	6급	원 장	원 장	

IV. 검토 총평

- 상위법령 및 준용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용어 개정 사항 원안(수정) 승인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 적용됨에 따라 조기 시행하여 직원 사기 진작

V. 승인내역

의안번호	의안명칭	승인사항
제330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수정 승인
제331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업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승인
제332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승인

붙임 공단 이사회 부의안 1부. 끝.

